

第114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1號(附錄)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 1.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 面
- 2. 所管部署 主要業務推進現況 報告聽取 15面
 - 가. 都市管理局
 - 나. 建設交通局

1.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826
----------	-----

제출년월일 : 2001. 8.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2000.10.20)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추가하며 변상금의 청문제도 도입으로 변상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행 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유재산의 사용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의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추가 함(안 제6조)

다.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자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조정함(안 제21조)

- 현행 : 매각대금 5년 이내, 이자 연 8% 분할납부
- 개정 : 매각대금 10년 이내, 이자 연 5% 분할납부

라. 공유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함(안 제24조)

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 신설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대상재산과 전세금의 산출방법 및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함(안 제24조의2)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이나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기준

-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한 때
-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 기타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전세금의 산출방법

- 전세금은 서울특별시중로구금고 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 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함

○수납 및 반환절차

- 전세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 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취소 또는 해지되어 중도 해지이자 그 때까지의 사용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산하도록 함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제2항)

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변상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시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의2)

3. 개정근거

○ 지방재정법 제73조, 제74조, 제109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80조의2, 제84조, 제84조의2, 제92조, 제100조,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7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통보(서울시재산 45500-1400. 2001. 6. 5)

4. 예산수반여부 :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및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유재산관리에 관하여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제3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

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인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2장의 제목 “행정재산의 관리”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재산”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하며, 동조 제2항 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3호 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동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동조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중 “제29조”를 “제2조”로 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 안의 공유재산

제2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매각하는 경우

-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50이상”으로,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1000분의 40”을 “1000분의 40이상”으로 하고, 동조제6항 중 “1000분의 25”를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며,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5이상”으로 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3중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동조제1호 가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서울특별시중로구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 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관리하되, 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7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⑤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구청장은 제22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동조 제3항제3호 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포함”으로 하며, 동조 동항 동호 단서 중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 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위탁재산의 관리) 공공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영업수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느때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p>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③(생략)</p> <p>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인으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2.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p>	<p>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 ②(생략)</p> <p>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 ⑩(생략)</p> <p>⑪제3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 각호의 1의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용재산관리에 관하여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정하는 사항 <p>④ ~ ⑩(현행과 같음)</p> <p>⑪제3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 4.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인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p>제2장 행정재산의 관리</p> <p>제10조(관리 및 처분) ①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3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p>제11조(사용허가의 재산)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p>제2장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p> <p>제10조(관리 및 처분) ①----- -----행정재산·보존재산----- -----</p> <p>② <삭 제></p> <p>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 ----- -----</p> <p>②행정재산·보존재산----- -----사용·수익허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p> <p>3.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제12조(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p> <p>제14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p> <p>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생략)</p> <p>1. ~ 2. (생략)</p> <p>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p> <p>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p> <p>5. ~ 6. (생략)</p>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생략)</p> <p>1. ~ 3.(생략)</p> <p>4.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5. (생략)</p> <p>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9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삭 제></p> <p>3. ----- -----행정재산·보존재산----- -----</p> <p>제12조(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사용·수익허가----- -----</p> <p>제14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 -----</p> <p>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2조----- -----</p> <p>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안의 공유재산</p> <p>5.~ 6. (현행과 같음)</p>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현행과 같음)</p> <p>1. ~ 3.(현행과 같음)</p> <p><삭 제></p> <p>5. (현행과 같음)</p> <p>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생략) ③(생략) 1. ~ 4.(생략)</p> <p>5.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매각하는 경우</u></p>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년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전원의 개발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u>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u></p> <p>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의</p>	<p>7.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매각하는 경우</u></p> <p>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 4.(현행과 같음)</p> <p><삭제> .</p>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 ----- 1,000분의 50이상 ----- . -- -----</p>

현행	개정안
<p>제24조(건물 등의 대부료 산출기준) ①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4조(건물 등의 대부료 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p> <p>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 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p>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서울특별시중로구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7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생략)</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0세금은 영 제 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관리하되 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7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p> <p>⑤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이하“전세자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p>제25조(대부료 등이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7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현제와 같음)</p> <p>②구청장은 제22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p>

2. 主要業務 推進現況 報告聽取

가. 都市管理局

1. 자연경관지구 해제등 재정비

추진목표

- 경관지구해제 : 4개 지역(27,626㎡)
- 건축규제 완화 관리지역 : 12개 지역(68,388㎡)

현황조사

- 조사일시 : 2000. 9 ~ 12
- 조사인원 : 도시계획과장 외 직원 4명
- 조사내용 : 5,698필지, 3.0km²

추진경위

- 공람공고 : 2001. 1. 29 ~ 2. 12
- 구의회건의청취 : 2001. 3. 20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1. 3. 30
- 서울시에 도시계획 변경결정 요청 : 2001. 5. 4
- 서울시 보완지시 : 2001. 6. 7
(계획설명서, 해제등 사유서, 해제지역 조경의무 면적 확보방안, 건축물 및 토지이용현황, 지적도면 등)
- 보완사항 제출 : 2001. 6.17

현재 진행 사항

- 우리 구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안을 서울시에서 종합 검토 중에 있음.

□ 자연경관지구 해제등 재정비 내역

○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명칭	구분	연번	위 치	면 적(m ²)		
				변경전	변경후	증 감
계			4개 지역			감) 27,626.2
인왕지구	변경	소계	3개 지역	751,925.9	730,229.8	감) 21,696.1
		1	종로구 팔판동 115-1일대			감) 11,490.6
		2	종로구 삼청동 20일대			감) 4,046.5
		3	종로구 삼청동 27-3일대			감) 6,159.0
성북지구	변경	1	종로구 혜화동 5-50일대	1,761,114	1,755,183.9	감) 5,930.1

○ 자연경관지구내 건축규제완화관리지역

연번	지구명	위 치	면적(m ²)	건축규제사항	비고
계		12개 지역	68,388.1	건축규제완화 관리지역	
1	평창지구	종로구 평창동 154-1일대	7,603.0	-건축물의높이:4층 이하, 15미터이하	
2	"	종로구 평창동 148-21	1,303.0	"	
3	"	종로구 평창동 296-2일대	9,431.0	"	
4	"	종로구 신영동 5-1일대	2,998.0	"	
5	"	종로구 신영동 10-1일대	4,576.0	-건폐율:40%이하 -건축물의높이:4층 이하, 15미터이하	
6	"	종로구 신영동 72-2일대	5,022.0	"	
7	"	종로구 신영동 130-1일대	4,865.0	"	
8	"	종로구 홍지동 93-2일대	13,208.0	"	
9	"	종로구 구기동 54-3일대	11,686.0	-건축물의높이:4층 이하, 15미터이하	
10	인왕지구	종로구 청운동 12일대	1,171.3	"	
11	"	종로구 청운동 52-58일대	2,050.9	"	
12	"	종로구 삼청동 157-83일대	4,473.9	"	

2. 평창동 여객자동차정류장 해제

현 황

- 위치 : 평창동 148-16일대
- 면적 : 7,736㎡
- 시설결정일 : 1977. 2. 28

추진경위

- 1990. 5.21 : 민원제기
(이후 해제신청 5회, 행정소송 1회, 국민고충처리위 재소등)
- 1998. 4.30 : 구도시계획위원회 부결
- 2000.10.24 : 해제신청 재접수
- 2001. 6.29 :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1. 7.28 : 서울시 해제요청
- 2001. 8.25 : 서울시 의견회신(반려)

※ 서울시 의견

- 도원교통(주)에서 여객자동차정류장 부지소유주가 매도할 의사가 있을 경우 임대사용 또는 토지매입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있고,
- 향후 이 노선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차고지 및 회차지등의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시설유지 필요

3. 청진구역 6지구 재개발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청진동 166번지 일대 (면적 : 8,655.5㎡)
- 건축계획
 - 대지면적 : 6,783.4㎡,
 - 건축면적(건폐율) : 3,724.09㎡ (54.9%이하)
 - 건축연면적(용적률) : 101,700㎡ (800%이하)
 - 층 수 : 지상20층 이하/ 지하7층 이하

추진현황

- 1979.11.22 : 도심재개발구역결정(건설교통부고시 제428호)
- 1999.11.15 : 청진구역 제6지구 구역변경 공람공고(종로구공고 제310호)
- 1999.12.24 : 구의회 의견청취

- 2000. 1.10 : 도심재개발구역변경신청(종로구→서울시)
- 2001. 1. 5 : 도심재개발구역변경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375호)
- 2001. 4.11 :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
- 2001. 7. 6 :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종로구고시 제73호)
- 2001. 8.17 : 건축허가

□ 향후계획

-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 9 ~ 10월
- 이주 철거 및 공사 착공 : 2002년 상반기

4.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 현 황

- 위치 : 창신, 승인동 일대
- 면적 : 270,660㎡
- 구역지정일 : 1996. 6. 7 / 10. 17

□ 추진경위

- 1999. 7.21 ~ 8. 4 : 공람공고
- 1999. 9.30 : 구의회 의견청취
- 1999.10.26 :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0. 5.12 :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요청
- 2001. 1.17 : 궁안마을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 2001. 4.18 : 구역변경결정(590,000㎡→270,660㎡)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심의결과(2001. 8. 21)

- 왕산로북측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왕산로남측 :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시의 공공시설확보, 건축물 높이 등 기본지침 제시
- 승인동 7블록 : 특별계획구역 지정 -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추진

□ 향후계획

- 서울시 심의결과 보완하여 주민 공람공고(9월중)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9~10월)
- 승인 7블록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절차 병행추진
-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11~12월중)

※ 궁안마을 특별계획구역 확정(2001. 4. 23)

· 규 모 : 지상 30층(3동), 지하 4층

- 용 도 : 아파트 2동+업무시설(오피스텔) 1동+판매시설
- ※ 현재 서울시 건축허가 심의 중

5.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목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150%, 층수 4층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200%, 층수 7층(12층)이하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250%

사업개요

- 대상 : 일반주거지역 면적6.84km²
- 내용 :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 기간 : 2001. 9 ~ 2003. 6. 30.
- 방법 : 전문업체에 용역 발주
- 예산 : 1억6천만원(서울시에서 지원)

추진계획

- 2001. 9 : 용역발주
- 2001.10 : 용역착수
- 2002. : 용역시행
- 2003. 6 : 용역준공

현재 진행 사항

- 2001.9월 용역을 발주코자 준비중(과업지시서 작성, 설계용역비 산정, 발주방법 검토 등)

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목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전수조사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불합리한 시설 해제 등 정비

추진내용

- 우리 구 조사내용

시설명	개 소	면 적(m ²)		보상비추정액 (억원)	비 고
		고시면적	편입면적(대지)		
계	119	5,476,000	139,898	1,260	
도로	89	322,042	54,411	700	
공원	18	5,065,197	43,289	320	
기타	12	88,761	42,198	240	

○ 서울시 연구용역 시행

- 내용 : 재정비계획수립,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매수청구대응방안 연구 등
- 연구기관 : 시립대도시과학연구원/두산엔지니어링(주)
- 추진실적(1차 검토)

구 분 \ 종류	계	존 치	우선폐지	검토중
총 계	119	49	7	63
도 로	89	20	6	63
공 원	18	18	-	-
기 타	12	11	1	-

□ 현재 진행 사항

- 서울시 연구용역에 협조하고 있으며, 12월 서울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구 미집행 시설을 재정비 하겠음.

나. 建設交通局(토목과)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 추진사항

1. 강우 현황

7. 14 ~ 15 : 연속 강우량 363mm

일 자	강 우 량	1시간 최대강우량
7. 14. 16시~24시	42mm	117mm/hr 2001.7.15 02:10~03:10
7. 15. 00시~13시	321mm	

7. 29 ~ 31 : 연속 강우량 274mm

일 자	강 우 량	1시간 최대강우량
7. 29. 04시~19시	149mm	42mm/hr 2001.7.29 14:10~15 0
7. 30. 00시~14시	64mm	
7. 31. 02시~17시	61mm	

2. 피해 현황

인 명 : 3명 (관외 발생)

재 산 : 총 1,626건

- 주 택 : 403건
- 공 장 : 109건
- 상 가 : 1,100건
- 자동차 : 14건

시 설 : 총 76건

- 도 로 : 29건
- 축 대 : 11건
- 기 타 : 36건

3.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 현황

인명 피해 : 3명 --- 위로금 지원 20,000천원(세대주 : 10,000천원, 세대원 2명 : 10,000천원)

재산 피해 : 계 1,455,300천원

○ 주 택 : 408세대 --- 367,200천원

○ 공 장 : 109개소 --- 98,100천원

○ 상 가 : 1,100개소 --- 990,000천원

- 시설 피해 : 76건
 - 도로 : 29건 -- 복구 완료
 - 축 대 : 11건 [복구 완료 10건
진행 중 1건
 - 기타 : 36건 [복구 완료 28건
진행 중 8건

《 추진 현황 》

구 분	계	완 료	추진 계획			비 고
			8월	9월	10월	
계	76	67	2	2	5	
도 로	29	29	-	-	-	
축 대	11	10	-	-	1	
기 타	36	28	2	2	4	

4.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현황

- 분전함 누전차단기 : 134개소 완료 (일자 : 2001.7.23)
- 등주내 누전차단기 : 3,039 중 [1,146개 완료 (38%)
1,893개 설치 중 (완료예정일자:2001.9.5)

5. 향후 추진계획

- 빗물받이 및 취약지역 준설작업은 8월말까지 완료
- 수해 피해지역 항구시설 10월말까지 완료

인명사고 발생 내역

□ 인명 피해 : 3명 (관의 발생)

- 관외 접수내용
 - < 2001. 7. 15 >
 - 이효창 (남, 27세) : 평창동 547-15. 공익요원
⇒ 경기 가평 남면 명지계곡에서 사망 (교통지도과)
 - 이재현 (남, 55세) : 통인동 31-6 미성맨션 102호
⇒ 경북 울진 응봉산 등산중 실종, 삼척에서 사체 발견(삼척경찰서 통보)

< 2001. 7. 30 >

- 장수자 (여, 55세) : 승인동 237-15

⇒ 성북구 정릉동 북한산 영추사 입구 계곡에 급류로 실종 (성북구 재해대책본부 통보)

4. 예산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비 (금액단위:천원)	추진계획	비고
	계 16건	670,000		
1	평창동 올림피아 호텔앞 하천제방(석축) 유실 보수	20,000	공사 완료	자체 복구 (하수시설물 보수)
2	명륜 1가 7-2 삼화빌라앞 축대 유실	10,000	○ 7.30 심의 신청 ○ 8. 9 예산 배정 - 공사시행 예정 (2001.9.15한 완료 예정)	시 재해대책기금
3	홍제천 하천제방 정비공사	70,000	○ 7.19 심의 요청 ○ 7.21 예산 배정 - 공사 시행중 (2001.10.31한 완료 예정)	시 재해대책기금
4	무악동 무악연립 50동앞 하수암거 보수	10,000	공사 완료	자체 복구 (하수시설물 보수)
5	충신동 2번지 하수암거 보수	10,000	공사 완료	자체 복구 (하수시설물 보수)
6	동송동 129-150일대 하수암거 개량	50,000	공사 완료	시 재해대책기금
7	명륜1가 5번지 하수관 개량	10,000	공사 완료	자체 복구 (하수시설물 보수)
8	구기동 76-2호 주변 침사지 보수	7,000	공사 완료	자체 복구 (하수시설물 보수)
9	관내 하수관거 준설 정비공사	200,000	○ 7.19 심의 요청 ○ 7.21 예산 배정 - 공사 시행중 (2001.8.31한 완료 예정)	시 재해대책기금
10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150,000	○ 8. 2 심의 요청 ○ 8. 9 예산 배정 - 공사 시행중 (2001.8.31한 완료 예정)	시 재해대책기금
11	홍지동 69-39 도로포장공사	11,000	○ 7.30 심의 요청 ○ 8. 9 예산 배정 - 공사시행 예정 (2001.9.15한 완료 예정)	시 재해대책기금
12	북악스카이웨이 도로복구공사	2,000	○ 7.30 심의 요청 ○ 8. 9 예산 배정 - 공사시행 예정 (2001.9.15한 완료 예정)	시 재해대책기금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금액단위:천원)	추진 계획	비 고
13	구기동 74 산사태 복구공사	80,000	○ 7.22 심의 요청 ○ 8. 8 예산 배정	시 재해대책기금
14	부암동 산 2-5일대 복구공사	10,000	- 실시 설계중 - 실시설계후 공사시행	
15	누상동 산1-3번지 복구공사	10,000	예정 (2001.10.31한 완료 예정)	
16	평창동 488-1 도로복구공사	20,000	공사 완료	자체 복구 (하수시설물 보수)

(교통지도과)

주택가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현황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내역

○ 설치근거

- 1996.7.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실시
- 2000.7.27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유료화 계획 서울시 지침 시달
- 2000.9.27 : 구청장 방침 925호 지침의거 추진 계획 수립 시행

○ 운영총수 : 87개소 2,194면 (동별 내역 별첨 참조)

- 효자·사직 지역 : 16개소 401면
- 평창·부암·청운 지역 : 7개소 154면
- 가회·삼청 지역 : 9개소 284면
- 무악·교남 지역 : 12개소 267면
- 종로1-6·이화 지역 : 19개소 371면
- 명륜·혜화 지역 : 9개소 305면
- 창신·승인 지역 : 15개소 412면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운영 과정

○ 설치 - 교통행정과

- 서울시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계획에 따라 5m이상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용 부지에 대하여 주변 교통량, 주차수요, 도로상태(경사, 굴곡 등), 주변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구획 설치 타당성 검토
- 타당성검토 결과 주차구획 필요성에 따라 주차구획선 설치면수, 설치형태(직각, 평행, 사각 등)등을 결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공안 협의
- 서울경찰청(관할 경찰서)의 교통관제심의 결과 설치가능 통보에 따라 대상지에 주차구획선 설치
- 주차구획선 설치 완료 후 교통지도과에 관리 이관 통보

○ 관리운영 - 교통지도과

- 교통행정과로부터 공영주차장 설치완료 통보(관리이관)된 주차장에 대하여 지역 여건(상업, 주거 등)주차수요, 외부유입차량상태, 주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교통지도과에서 재검토하여 관리 운영 구분(전일제, 야간제 등)을 방침으로 결정
- 위 방침에 의거 동사무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일정 공문을 보내고, 교통행정과에 시설물 설

치 요청(사용안내표지판 등)

- 동사무소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실시시기에 맞추어 신청서 접수, 주차구획 지정, 사용요금 수납을 시행시작 10일전에 끝내고 교통지도과에 구청으로 징수결의서 및 지정자 명부 송부
- 교통지도과에서 지정자 명부에 의거 지정차량 증 작성 등을 통하여 지정자에게 발급하고 비지정자의 부정주차 단속업무 수행 관리
- 동사무소에서 지정차량의 각종 변경사항(지정해제, 차량변경 등등)보고시 구청에서 환불 및 자료 수정
- 매분기별(3개월 단위) 1회씩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 재 지정 관리 운영

○ 운영 절차

처리 순서	업 무 명	해당 부서	비 고
1	-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교통행정과	
2	- 통보된 노상주차장중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 지역주민의견 수렴 없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동사무소를 통하여 의견수렴 지시	교통지도과	
3	- 관내 설치된 노외 주차장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 후 교통지도과에 보고	해당 동사무소	
4	- 해당 동사무소에 보고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주차장운영 방침 결정 후 - 시행 · 동사무소 : 운영안 송부(플래카드 제작) · 교통행정과 : 시설물 설치 요청	교통지도과	
5	- 시행전 주차장 구획번호 기입 및 사용 안내표지판 설치	교통행정과	
6	- 운영에 따른 홍보(플래카드 게첨, 안내문 배부) - 신청서 접수, 구획지정, 요금수납 등 징수결의 및 지정자 명부를 교통지도과로 보고	해당 동사무소	
7	- 보고된 지정자 명부를 가지고 관리 운영	교통지도과	

□ 관리 및 단속 활동

- 주 간 (09:00 ~ 18:00) : 1개조 4명
 - 차량 순회 단속조 1개조 4명 → 단속원 2명, 공익근무요원 2명
- 야 간 (18:00 ~ 23:00) : 5개조 16명
 - 차량 순찰조 2개조 8명 → 단속원 2명, 공익요원 6명

- 고정 배치 2개소 5명 → 공익근무요원 5명(창신2·승인1·혜화2)
- 사무실 내근 1개소 3명 → 단속원 1명, 공익근무요원 2명
- 일·공휴일 : 거주자우선주차장 전담 단속조는 없고 불법주차단속 조가 민원처리
 - ※ 구조물내 거주자우선주차장 단속 : 현장 공익 배치 2개소 3명
- 주차요금
 - 전일제(24시간) : 월 4만원
 - 야간제(18:00~익일09:00) : 월 3만원
 - 주간제(09:00~18:00) : 월 3만원

□ 이면도로 거주자 주차구획 확대 실시 추진 내역

- 5개소 758면 설치 확대 → 2001. 9. 1부터 운영예정 추진 중
- 30개소 550면 확대예정으로 주차구획 설치 → 교통행정과
-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실시 : 2001.12월경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완료시

□ 문제점

-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하여 주차구획 설치 면수가 부족하여 수요·공급불균형
- 야간 주차 단속 견인시 주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견인불가 지역이 많아 이용 주민 불만 가중

□ 보완 대책

- 야간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 불법주차 단속(단속공무원 확대 실시 10월 이후)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확대 : 3개소 175면
- 간선도로변 야간박차 구간 확대추진 :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 협의

